

② 장기요양 서비스 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(신원인수인)가(이) 전액 부담한다.

【계약의 해지】

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·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.
2.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.
 -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 -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 - ③ 수급자의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
 -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서비스 수급자와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 - ⑤ 수급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
 - ⑥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 - ⑦ 수급자(또는 보호자)가 특별한 통보 없이 2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때
 -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
 - ⑨ 계약해지요건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이용기관에 종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.

【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】

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(이하 '보호자'에 포함)을 지정하여야 하며,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1. 신원인수인의 의무
 -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
 -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. (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. 단, 담당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과 목욕 서비스 방법이 건강 상의 위험도가 높을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.)
 - ③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일방적인 요구로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할 시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. 또한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. 다만, 수급자 및 보호자 가정 내 환경 등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대중목욕탕 동행을 요청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.
 - ④ 인적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. 만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, 집기 등의 오·파손·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.
 - ⑤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.
 - ⑥ 수급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.
 - ⑦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(수급자의 사망, 시설 입소, 타지역 이동·거주지변경, 입원, 해외 출국)가 아니라면 계약 기간 동안 타 기관으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.
2. 신원인수인의 권리
 -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
 -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
 -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
3. 신원인수 방법
 - ①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(주택), 본 기관 또는 기타 장소에서 대상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.

(출처: 엘림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중)